



인권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야기

인권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야기



통권 136호
ISSN 1599-9599

20세기의 인간은 회복기의 법과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을 구속하지만 파괴하지는 않고 인간을 인도하되 짓누르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말이다.

-알베르 까뮈-

/ 죽음의
복도에서 /

통권 136호
2021. 9. 10

2021
9
+
10

통권
136호

국가인권위원회





카불 시내 중학교 교실은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대부분 맨바닥에서
책과 노트도 없이 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 시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카펫을 짜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여학생들의
수업 열기는 매우 높다.
한 소녀가 쉬는 시간에
봄 햇살을 맞으며 밖에서
놀이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다.

카불.
아프가니스탄.
2002. 성남훈

겨우 20년
혹은 이미 20년,
희망이
꺾이지 않기를

(편집자)



인권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야기

여는 글

2
희망이기를
희망

하나의 인권 이슈를
깊이 그리고 넓게 이야기합니다

두드림

6
생각하기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
수단이 될 수 없어

10
깊이 보기
죄와 (인간의 얼굴을 한)벌

14
공감 인터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
32명의 사형확정자를 만나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인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열림

18
이슈 돋보기
한국에 '당당한 타투'는 없다

22
일상을 보는 눈
과도한 친절은 사양할게요

26
문화 다시보기
1등은 결코
4등을 이길 수 없다

30
기자의 시선
서평
브랜던 개릿의 <오염된 재판>과 <허위 자백과 오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활동)

어울림

32
20년 역사 돌아보기
④ “의족은 신체의 일부인가?”

36
인터뷰 기사 ① 인권재단 사람
인권활동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다

38
인터뷰 기사 ② 인권의학연구소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애쓰며 나아가다

40
인권위가 말한다
1 연이은 군 내 성폭력 피해발생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
2 보건복지부, 이주아동 보호권 보장 관련 권고 일부수용
3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4 국민 10명 중 9명, “정치인-언론 혐오표현 자제해야”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결과 발표
5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52
뉴스

10



22



38



2021
9+10

통권
136호



모바일에서도 「인권」을 만나세요.
<http://www.humanrights.go.kr/site/main/webzine>

보이스아이 바코드

책자의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인쇄된 바코드는 스마트폰에서도 '보이스아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 모녀 살인 사건, 영유아 살인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 여론이 다시 일곤 한다. 작년 6월에는 흉악범죄 등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의무로 강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형 집행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관한 결정에서 모두 합헌 판결을 한 바 있으나, 지난 10년간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다.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그 심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 수단이 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사형제 논의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

국제엠네스티가 매년 발간하는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2010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96개였으나, 2020년에는 108개 국가로 증가하여 이제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적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8개국은 군사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형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28개 국가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하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전 세계의 3분의 2를 넘는 144개 국가들이 이미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하며,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07년 12월 18일부터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에 관한 결의」를 채택해오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7개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모두 기권하였으나 2020년에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2018. 3.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헌법 제110조 제4항을 삭제하고, 생명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2015. 11.) 및 「대한민국 제3·4·5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2017. 5.)에서 사형제도 폐지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 받는 등 국제사회의 권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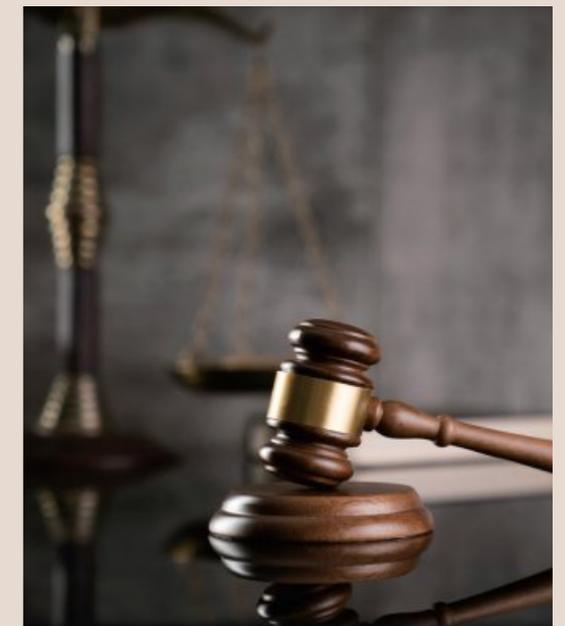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부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4. 6.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시작으로, 2009. 7. 6.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8헌가23)에 따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

을 제출하였다.

또한 2017. 2. 21. 국회의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형법」상 사형 집행의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2018. 9. 10.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권고를 수용하여 사형 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에 대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제출을 의결하고, 2021년 2월 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밖에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공론화를 위해 성명 발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

우리 「헌법」이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헌법 해석상 생명권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않고 모든 인간의 생명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며 필요한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불분명한 범죄 억지력 효과

헌법재판소는 과거 사형의 범죄 억지력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형제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사형제도 존치론의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사형제도가 사회 방어 기능뿐만 아니라, 응보주의 기능의 실현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의 부활을 요구하거나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는 것도 사형의 범죄 억지력 및 응보주의적 기능을 우선하는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 억제(일반예방)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 없다.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하여 조사한 국제사회의 보고서들은 사형제도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범죄율 등과 관련하여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9건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다음해 살인사건 발생건수는 전년도 615명에서 806명으로 증가한 반면, 1993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살인사건 발생건수는 705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23명의 사형확정자에 대해 집행하였으나, 그 다음해에는 살인사건 발생건수가 전년도보다 177건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형 선고나 집행이 강력범죄를 예방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강력범죄 중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해 사형제도가 과연 얼마나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범죄의 예방은 범죄 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사형 판결에 대한 오판 가능성

사형제도 존치론 측에서는 오판의 가능성은 비단 사형 판결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절차에도 존재하며, 수사의 과학화와 사법절차를 개선하면 오판의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부분적인 오판의 우려로 사형제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조치 하에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된 소위 1974년 ‘인혁당 대건위 사건’의 희생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 밖에도 2017년에는 1982년 일명 ‘김제 가족 고정 간첩단’ 사건으로 희생된 고故 최을호, 2018년에는 ‘위장 귀순 간첩’ 혐의를 받아 1969년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 2020년에는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 고故 장환봉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록 과거 독재정권 하의 공안사건 등에서 드러난 국가의 과오이기는 하나, 사형은 다른 형벌과 달리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대체 형벌 도입에 대한 논의

최근에는 사형제도 폐지와 더불어 대체 형벌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 폐지 동의 의견이 20.3%였으나, 적절한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 동의 의견이 66.9%로 나타났다. 이는 사형제도를 대체할 만한 형벌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사형을 대체하여 여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체 형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국가 및 사회가 범죄 피해자들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 마련 등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해본다.





죄와 (인간의 얼굴을 한)벌

야만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사형제도는 가장 잔혹한 형벌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고조선의 8조법과 함무라비법전에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집행이 흔한 것은 아니었으며 살인을 제외하고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사형의 집행은 중세 강력한 국가권력이 확립되면서부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절대왕권의 확립과 유지에 사형만큼 위협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는 없었으며, 18세기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당시의 사형 집행은 단순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화형, 거열형, 능지처참형, 팽형, 투석형 등으로 잔혹함을 더해 갔으며, 위하력을 위해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절대 권력이 지배한 곳에는 권력의 유지를 위해 사형을 이용해왔고, 그 곳에는 많은 오용과 남용의 자취가 남아있다.

중세 후기까지 형벌의 왕좌를 차지하던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는 계몽사상과 함께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체사레 벅카리아는 1764년 자신의 책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잔혹한 형벌보다는 확실하고 예외가 없는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역설하였다. 다른 계몽사상가들 역시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제한, 가혹한 형벌 대신 관대하지만 확실한 처벌, 잔인한 형 집행보다는 형의 예고를 통한 일반예방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계몽사상은 19세기의 자유주의 정신과 결합하여 인도주의 형사사법의 이념을 탄생시켰다. 이 근대 형사사법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레비아탄’의 얼굴을 하고 억압과 증오, 복수로 점철되었던 중세의 형사사법을 인간의 얼굴을 지닌 형사사법으로 변모시켰으며, 오늘날 보편적인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질서가 되었다.

18세기 말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 사형제도의 개혁이 시작되었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공개적인 사형 집행의 폐지라는 명백한 진전이 나타났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보편적인 논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초안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 B규약)’에서는 사형폐지가 바람직함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예컨대 전시 범죄 등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형의 존치는 열어놓았다.

유럽인권협약도 제2조에서 “법원이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선고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식적으로는 사형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는 있었지만, 유럽평의회가 2002년 5월 3일 채택하고 2003년 7월 1일 발효한 제13호 의정서에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사형 폐지의 정당성과 범죄와 형벌의 악순환

우리 헌법도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계몽기 이후 국가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을 최상위의 법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와 법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개인의 존엄이고,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법제도가 개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비록 극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도 그의 존엄과 가치의 생물학적 기초인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이미 계몽사상의 인도주의적 사고를 토대로 하는 오늘날의 국가와 법제도에서 계몽기 이전의 절대적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신화적인 논리 말고는 사형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사형폐지에 대한 국제조약 또는 국제협약

사형제도가 필요'악'이라는 생각은 범죄가 강해지면 범죄를 막기 위해 형벌도 가혹해져야 한다는 '상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상식'은 강한 형벌의 범죄 억지력에 대한 오신에 기인한다.

의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인 국내법적 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질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의 범주에 포함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하고는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때에만 인정하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중대범죄에는 사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를 필요'악'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형제도가 필요'악'이라는 생각은 범죄가 강해지면 범죄를 막기 위해 형벌도 가혹해져야 한다는 '상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상식'은 강한 형벌의 범죄 억지력에 대한 오신에 기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한 형벌, 특히 사형제도의 범죄 억지력은 입증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잔인하고 모욕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어떤 국가도 흉악범죄를 척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가혹한 형벌이 더 가혹한 범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최근에 법정형이 크게 상향 조정되고 실제로 높은 선고형으로 이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차라리 유일한 증인인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범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동기의 강화를 가져온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범죄 때문에 형벌이 가혹해지고 강화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형벌 때문에 범죄가 강화되기도 한다. 범죄와 형벌이 서로를 강화하고 증가시키는 악순환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단순한 '상식'에 기초한 형사정책이 지배하는 한, 강화되는 형벌이 범죄와 함께 증식하는 역설을 해결할 수 없다. 형벌 중에 가장 잔혹한 형벌인 사형제도의 유지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상식'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대체로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로 논의되며,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등 사형의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한 국가들이 있다. 하지만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재사회화라는 현대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사형제도나 절대적 종신형제도는 동일하게 “흉악한 범죄자는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이며,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우리 사회를 흉악범들로부터 지켜주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도와 비교해 볼 때, 최근 여러 재심재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 사형이 집행된 무고한 “사법살인과 오심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 측면에서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근거로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으로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존엄을 위태화 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에서는 2007년 5월, 종신형 수형자 310명이 연대로 서명하여 “장래에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은 무(無)나 다름없으며 매일 조금씩 목숨을 깎는 형벌이라면 차라리 사형에 처하는 편이 낫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무기징역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벌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 선고하는 형벌이다. 우리 형법의 입법자는 처음에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 가중 시에 25년으로 하였기 때문

에,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불법과 책임이 15년, 또는 25년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범죄 유형에는 무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무기징역과 자연 수명을 교도소에서 다하는 종신형은 다른 의미였다. 하지만 2010년 개정형법은 모든 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선을 30년으로, 가중 시에 50년으로 규정하여, 무기징역의 의미는 사형제도 폐지론이 처음 나올 때와 전혀 달라졌다. 현재는 가중처벌의 경우 50년 이상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소년범의 경우는 감경이 이루어지므로, 성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이미 종신형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의 상한도 문명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장기이고, 그 위에 무기징역형, 그 위에 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처럼 유기징역의 상한이 가중 시 50년인 나라도 없고, 유기징역이 40년 이상이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한 나라도 없다. 현재 사형을 폐지하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년의 유기징역만으로도 충분히 종신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위에 무기징역형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게다가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 가능 기간도 20년으로 동시에 개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형집행정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수형 기간은 20년이다. 범죄로 교도소에서 20년 이상 수형생활을 하다가 70세가 넘어서 사회로 나오는 것, 이것으로 부족한가? 만약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가능 수형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면, 이 기간을 늘리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종신형을 대체할 수는 없는가? 현행법에서 사형제도만을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 없이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규정하면 안 되는지도 함께 논의되길 희망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사레 벵카리아가 250여 년 전 역설한 것처럼 사형제도 폐지, 잔혹한 형벌보다는 확실하고 예외가 없는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욱더 효율적이고, 정치인에 의한 사면과 기준없는 가석방이 오히려 범죄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리 입법자와 정치인들도 이제는 '상식'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사형제도 폐지, 잔혹한 형벌보다는 확실하고 예외가 없는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욱더 효율적이고, 정치인에 의한 사면과 기준없는 가석방이 오히려 범죄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리 입법자와 정치인들도 이제는 '상식'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 32명의 사형확정자를 만나다



김대근
박사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제 존폐와 대체 형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확정자는 59명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연구위원)는 군 교도소에 수용된 4명을 제외한 사형확정자 중 32명을 면담했다. 그를 만나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는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이야기를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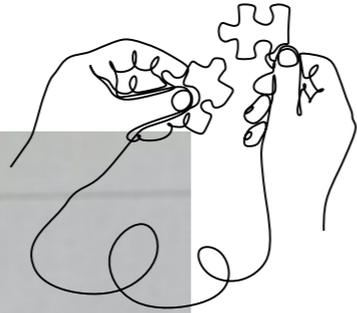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다

면담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허락을 받고, 사형확정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됐다. 그리고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구치소 6명, 부산구치소 3명, 대전교도소 7명, 광주교도소 10명, 대구교도소 6명을 1~2시간 동안 2번씩 인터뷰했다. 첫 번째 면담은 좋아하는 음식이나 TV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하루 일과, 생활환경, 희로애락 등 삶과 생활 전반에 대해 물었다. 반면에 두 번째 면담은 범행 당시 기억, 피해자에 대한 감정, 사형제에 대한 의견 등 다소 무거운 질문들을 물었다.

사형확정자의 생활환경은 교정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랐다. 크게 출역 없이 독거 수용을 하거나 출역을 하며 다른 수용자와 혼거 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대부분 독거 수용을 하는 것보다 혼거 수용을 선호했다. 아울러 교정기관에서 지정한 기상시간보다 일찍 기상해 개인 시간을 보낸 뒤 일과를 시작하며, 반복되는 삶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독서, 필사, 편지 쓰기, TV 시청 등을 했다.

한편 사형확정자의 심리상태는 천차만별이었다. 대체로 사형이 확정되면 처음엔 적응을 못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5년 정도가 지나면 출소의 희망을 버리고 교정기관 내의 삶을 받아들였다.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사형확정자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더러 무죄를 호소하는 사형확정자도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입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언론의 자신의 범죄 사건 보도, 다른 강력사건 보도, 사형제 관련 보도 등이 나오면, 사형 집행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대근 박사가 사형확정자 면담의 목적과 설명을 덧붙였다.

“사형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사형확정자의 실증적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면담은 사형제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와 대체 형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면담 진행을 위해 사형확정들과 라포(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개별 사건을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가급적 개인의 삶과 생각을 중심으로 사람 자체를 바라보려고 노력했



사형확정자를 실제로 만나 보니, 끝없이 갇혀 사는 절망적인 삶 대신 사형 집행을 원하는 사형확정자들도 있었습니다. 사형확정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단순히 기술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습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를 실제로 만나 보니, 끝없이 갇혀 사는 절망적인 삶 대신 사형 집행을 원하는 사형확정자들도 있었습니다. 사형확정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단순히 기술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로 범죄를 예방하기는 힘들다

강력사건이 발생하거나 관련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한다. 이는 사형제가 강력사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사형제로 강력사건이 감소하거나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강력사건이 늘었다는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대근 박사도 사형제는 범죄 예방의 큰 효과가 없다고 전했다.

“이번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형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형확정자는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쇄살인의 경우 범행 당시 흥분과 격정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연쇄살인의 경우 자신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범행 전에 형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술과 마약에 취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사형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

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형의 대체 형벌이 마련된다면 사형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존치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처럼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형을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형제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56개국, 우리나라처럼 사형 집행을 중지한 국가는 29개국이다. 이처럼 사형제 폐지나 집행 중지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국회에 사형제 폐



지법 발의를 요청하는 등 종교, 인권, 시민단체에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 VS 상대적 종신형, 사형의 대체 형벌은?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대체 형벌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이 언급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감형이 가능해 사형확정자 중 무기로 감형된 사람도 있었다. 아직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다시 감형돼 가석방이 된 경우는 없었다. 김대근 박사는 사형의 대체 형벌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이 아닌 최저 복역 기간을 전제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 다시 말해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번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집행하는 것이 인권친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사형확정자와 희망이 없는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교도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탈옥이나 싸움 같

은 일탈이 있더라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너 또는 너의 가족이 피해자여도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도 사형을 집행하고 싶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범죄의 적정한 형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분노는 당연하고 감정도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형벌의 목적이 복수나 응보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은 사형제의 효과, 사형제와 다른 법과의 관계, 수용자의 인권 문제, 국민의 법감정 등 종합적인 관점을 고려해 냉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대근 박사는 2019년에 이어 올해 추가로 10명의 사형확정자를 만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되어 내년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형이 폐지될 때까지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범죄와 형벌에 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필요하고, 사형제 폐지는 철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에 ‘당당한 타투’는 없다

1992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마광수 교수는 소설 '즐거운 사라'를 출간 후,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 마이클 잭슨은 꾸준히 내한공연을 시도했으나, '근검절약' 풍토를 해친다는 정부의 의견으로 번번이 무산되었고, 종교단체는 그의 음악이 '사탄의 음악'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화 암흑기에 또 다른 '사법 퀘변'이 탄생한다. 바로 타투가 의료 행위라는 판결이다. 물론 이 판결은 타투 작업 과정에 대한 학술적 분류를 통해 내린 결론은 아니다. 그 시기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 정서적 판단이었다. 당시, 타투(문신)는 국민 대다수의 눈높이에서 혐오 문화였다. 일본 야쿠자의 문화를 흉내 낸 조직폭력배들의 상징이었고, 대다수의 타투는 상대에게 위압감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용도였다. 사법부는 어느 누구도 타투를 할 수 없도록 '타투'와 가장 거리가 먼 '의료'영역으로 법적 분류를 시도하여 문화 자체를 봉인하려 했던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웃나라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온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문화 인식 수준이나 사법 원칙에 대한 부끄러움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적 동기가 더 컸기에 용기를 냈던 것 같다. '타투는 의료 행위다'. 잠깐 웃고 변경되었어야 할 이 판례는 30년을 살아냈다. 심지어 30년간 포자처럼 부유하며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스며들었다. 이는 타투가 정말 의료 행위라 받아들이는 문화지체 현상을 만들어냈다. 타투 산업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슬프고 웃기며 공포스러운 사례들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요즘 케이블 채널에서 여성 댄서들의 경연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전문 댄서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다채로운 타투들이 노출된다. 역시나 관행대로 댄서들은 피부색 밴드로 타투를 가리고 등장한다. 그런데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한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타투 중 딱 한 개 정도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흰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관행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따르기 위해 노력은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어떤 타투는 가려야 하고, 어떤 타투는 보여줘도 되는가. 무슨 이유와 기준으로 타투 간에 차별이 발생한 것일까? 그런데 타투 간의 차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경연에 참가한 지원자는 타투를 가리는 성의를 보여야 하지만,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가수 보아는 타투를 가리지 않는다. 어떤 근거와 기준이 사람 간의 차별을 당당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타투에 대한 방송금지 관행은 어떤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오랜 관행으로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외모(타투)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강제적으로 가리고 평가하는 문화지체 현상에 동참하고 있다. 그냥 살포시 웃을 수 있는 문제 같지만, 이 관행이 만들어낸 오염은 사람들의 사고 체계 깊숙한 곳을 더럽힌다. 공포스러운 사례도 있다. 타투는 소비자의 몸에 평생을 함께 할 그림을 그려주는 예술업이자 서비스업이다. 작업 과정이나 결과가 미흡할 시, 소비자는 당연히 불만을 얘기하고 배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민사적 다툼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르다. 방금 전까지 타투 서비스를 청탁한 소비자가 갑자기 타투이스트를 불법의료행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며 환불과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타투이스트가 법적 약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협박과 갈취를 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당한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며, 징역을 선고받기도 한다. 단순히 돈을 노리고 한 달간 십여 개의 타투를 받고 모든 작

업자에게 연락해서 금전을 요구하다가 타투유니온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미대를 졸업하고 사람의 피부를 표현 수단으로 삼은 주변머리 없는 화가(타투이스트)들이 이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일년에 한두 명씩 목격하고 있다. 다음은 그냥 좀 이상하고 괴기스러운 사례이다. 2020년에는 국세청은 타투이스트들이 정확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타투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문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고 직권으로 업종/업태를 변경한 사례도 있다.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된다니!". 물론 타투이스트들도 합법의 영역으로 한 발 들어가는 것 같아서 환영했지만, 무작정 따를 수는 없었다. 앞서 언급한 신고 사례들은 보통 '의료법위반'으로 기소가 되며 벌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일했다고 판단이 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기소가 되고, 최저 형량이 징역 2년부터 시작된다. 타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은 영리가 목적이란 증거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가이드에 따르면, 사법부는 징역 2년이라는 비정상적인 양형을 하게 된다. 행정부는 정상 직업으로 납세를 종용하고, 그렇게 하면 사업부는 징역을 선고한다. 경이롭게 기괴하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2015년 미래유망신직업으로 타투이스트를 선정했다. 이때 직업코드가 발급되었지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 행정과 사법의 충돌로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타투이스트들이 떠안고 있다. 참으로 괴이하다.



법제도 밖에서 어렵게 성장한 타투 산업은 수년 전부터 찬란한 꽃을 피웠고, 현재는 1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20만 명의 타투이스트들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소비자의 안전과 산업의 관리를 위해 이미 법제도가 마련되었어야 하지만 우리는 1992년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0년간 떠다니는 포자가 어디선가 거대한 버섯으로 성장했는지, 의사협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당당히 법제화를 막아서 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조 원 시장의 매력에 폭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눈썹 문신'이라고 검색을 하면 유료광고 중인 업체의 100%가 병·의원이다. 그래서 의심이 된다. 또,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99%의 타투 작업은 의사가 아닌 일반 타투이스트들을 고용해서 작업한다.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면허대여라는 심각한 불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의사가 타투를 하더라도 사용되는 모든 기구가 의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의료다. 즉, 현재의 판례 아래에선 그 어떤 타투 작업도 합법일 수 없다. 그런데 왜 국회에는 눈썹 문신을 한 의원들이 이렇게나 많고, 대선후보들의 눈썹은 점점 진해질 수 있을까? 직업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111조)' 위반사항이기도 하다.

하나의 문화를 모두가 사랑할 수는 없다. 타투는 앞으로도 계속 호불호가 극명한 문화일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모두가 이 문화를 좋아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불호를 법으로 보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사법적 판단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정서에 기대어 만들어질 때 어떤 궤변이 사회를 지배하는지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법, 행정, 언론 매체들이 차별과 부조리에 무감각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법적 판단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정서에 기대어 만들어질 때 어떤 궤변이 사회를 지배하는지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법, 행정, 언론 매체들이 차별과 부조리에 무감각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도한 친절은 사양할게요

깻잎 트레이,
컵라면 박스 속 나무젓가락,
라면 묶음 포장

less plastic more life

영국 상점의 로션은

포장이 왜 안 되었지?

몇 년 전 가을, 영국 런던으로의 출장길이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역시 비행기에 몸만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버렸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인간답게 만드는 화장품과 치약 등 생활필수품을 전혀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한국의 올리브영과 같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영국의 부츠에서 새 제품을 사기로 했다.

로션과 치약을 사려던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열대에 올라온 상품이 새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한국에서처럼 포장이 뜯어지지 않은 새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포장된 상품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 한국에서는 직접 써 볼 샘플이 있고, 샘플 뒤편으로 비닐 포장이 된 제품이 줄 서 있는데 이 선진국은 왜 소비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건가'하는 불만이 샘솟았다. 의심 많은 소비자인 나는 한참을 제품 앞에 서 있다가 진열대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던 로션을 집어 들었다. 열어보니 다행히 사용감이 없는 새 상품 같았다.

비싸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포장을 잘 하지 않은 걸까 생각해봤다. 그런데 좀 더 비싼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하는 가방과 지갑 가게에 갔을 때도 반듯한 상자에 포장된 새 제품을 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외국을 동경하거나 외국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외국에 오래 살아보지 않아 인상 비평에 가깝다는 한계도 인정한다. 다만 토종 한국인인 나는 외국의 상점에 진열된 물건을 처음 볼 때마다 '포장 참 대충했네'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수년 동안 혼자 묵혀두었던 이 생각은 최근 탈플라스틱 운동과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대에 힘입어 한국의 소비 문화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깻잎을 왜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아야 했나요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있던 지난해 8월 결혼한 뒤 직접 살림을 하게 되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더 많아졌다. 결혼 이전, 즉 가정 내 쓰레기 처리가 내 몫이라기 보다는 어머니의 몫일 때에는 가격, 상품의 질 등이 중요한 소비의 기



플라스틱 트레이에 소분된 깻잎

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쓰레기 배출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집 근처 대형 마트의 포장된 채소를 산 적이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채소를 듬뿍 넣어 채수를 내어 요리하는 걸 즐기고, 각종 나물 요리를 좋아하지만, 양과 포장 상태 때문에 마트에서는 채소를 구입하지 않는다. 우선 포장된 제품 대부분이 일주일에 요리라고는 한두 번 하는 2인 가구가 먹기에 양이 너무 많다. 지구 반대쪽에는 식량이 부족해 목숨을 잃어가는 지구인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힘들게 조리한 음식을 설거지통에 버리거나, 냉장고에서 썩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1~2인 가구를 위해 소분해 포장된 제품들을 사기도 꺼려진다. 간편해 보이고 깨끗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체로 포장이 과하기 때문이다. 깔끔하게 비닐로 겹겹이 포장된 채소들을 보면 채소를 대신해 내 숨도 막히는 것 같다.

그나마 한 끼용으로 간단하게 비닐 포장되어 판매하던 990원짜리 깻잎마저 나를 배신했다. 원래 얇은 비닐 한장에 담겨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 나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도 대형 마트 앞을 지나다가 '오늘 요리에는 깻잎이 필요한데 동네 슈퍼까지 가지니 언덕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1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데 어떡할지'를 고민했다. 결국 그날 밤 깻잎 없는 요리를 해먹었다. 장바구니와 야채를 담아올 비닐을 챙겨가서 동네 슈퍼에서 파는 깻잎을 소량 사는 것이 그나마 친환경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동네 마트에 가려면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느라 힘이 들어 때로는 깻잎 먹는 것을 가볍게 포기했다.

물론 마트 깃잎이 트레이에 담겨 나온 이유는 유통, 보관 과정에서 깃잎이 상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초 한 식품기업 임원은 “환경단체가 주장하듯 플라스틱 트레이를 그렇게 쉽게 빼기가 어렵다.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더라도 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나”고 되물었다. 반년 동안 탈플라스틱 운동이 꾸준히 이어져왔고, 그 결과 최근 씨제이와 오뚜기 등은 즉석조리식품에서 플라스틱 트레이를 빼겠다고 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포장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다는 기업의 (무의미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하지 않는’이라는 자본주의의 법칙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친절함으로 포장했지만, 사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포장을 더욱 많이 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도 번들 상품을 사는 이유도 하나씩 샀을 때보다 대량으로 구입할 때 가격이 더 싸기 때문이다.

하나씩 사도 여러 개 사면

묶음 상품 가격으로 할인해주세요

친절함으로 포장됐지만, 사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포장을 더욱 많이 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도 번들 상품을 사는 이유도 하나씩 샀을 때보다 대량으로 구입할 때 가격이 더 싸기 때문이다. 라면 4~5개를 한 번에 담은 번들 제품이나, 질소 포장으로 빵빵하게 된 과자나 우유도 다시 테이핑을 하고 묶어서 묶음 상품으로 판다.

이제 소비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어왔던 기업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각성을 하고 자본주의의 한계를 쓰러기 문제에서 발견한 소비자들은 새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다.

여러 개의 상품을 구입할 때도 번들 상품처럼 똑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포장 쓰러기가 줄기 때문에 묶음 상품보다 개별 제품을 여러 개 사지 않을까. 나아가 포장돼있지 않기 때문에 장바구니와 보자기 등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씩 따로 사도 여러 개를 살 때처럼 할인 혜택을 주면, 서서히 모두가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 묶음 포장을 또 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많이 팔려고 하는 기업의 욕심과 귀찮은 것은 죽어도 싫은 소비자의 느긋함이

너도 나도 포장을 과하게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특히 컵라면 6개 묶음 상품은 묶음 포장뿐 아니라 과잉 친절의 대표적 사례다. 컵라면 6개는 보통 종이박스과 비닐 포장으로 덮여 포장되어 판매된다. 컵라면 하나씩 따로 사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박스마다 나무젓가락이 다 들어있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컵라면을 먹어야 하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나무젓가락까지 꼭 세트로 들어있어야 할까. 과잉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적응하게 된다. 회사 탕비실에 쇠젓가락을 둘 수도 있고, 자주 외부에서 식사하는 사람이라면 각자 젓가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외부 행사 때 필요한 컵라면이라고 해도 그건 참여인원만큼 나무젓가락을 따로 준비하면 된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의 줄일 수 있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배달앱들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무젓가락을 제공하도록 기본설정을 바꾸니 나무젓가락 사용량이 줄었다. 과거에는 일회용 젓가락과 손가락이 기본으로 제공됐지만 이제는 받고 싶은 사람만 받기를 원한다고 체크해야 하도록 바꿨을 뿐이다. 무조건 절대 일회용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보다 집에서 먹는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시민들도 큰 불편함 없이 배달앱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친환경적 실천을 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라면을 많이 먹으면 팜유를 얻기 위해 나무를 많이 없앨 수 있는데 라면을 꼭 먹어야 하는가”라는 생각까지 하겠지만, 일단은 나무젓가락까지 넣지 않아도 소비자가 알아서 젓가락을 구해 컵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사회가 편히 수용할 수 있어 보인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생각을 바꾸고 불편하면 불쾌하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추석 선물세트도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나의 경우 우산 지적질을 많이 하고자 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들도,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포장이 깔끔하다. 마음을 담은 선물은 포장을 정성들여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포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콩기름으로 인쇄된 종이포장이라도 기능적으로 필요가 없는 포장은 아예 없이 선물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집에 있는 보자기나 손수건 등 또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이용해 포장을 하거나 장바구니째 담아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다.

지적하다 보면, 제품의 대량생산, 대량유통이 기본값이 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런 포장 문화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동으로 퍼지는 우산을 좋아하고 소분되어 나와 보관이 용이한 제품을 선호하는 동거인을 보면,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는 도시인들의 욕망을 기업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자주 깨닫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없다면 직접 소분해서 담아갈 수 있도록 신선한 야채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제공이 가능해야 하고, 공산품도 지금처럼 하루 퀵배송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들고 값을 지불하더라도 보관과 유통이 용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현 체제에서 바꿀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란 것을 깨닫는다. 폭증하는 쓰레기 문제 속에서 발견한 것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일상에서 놓쳐버린 다른 지구인들과의 공존법을 탐구하는 힘 그 자체일지 모른다.





죽은 식빵도 살린다는 오븐이 있다던데... 한때 위원회에 반짝이는 영예를 안겨주었으나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 초성검색을 통해서야 찾을 수 있었던 4등이 부활했다. 유난히 4등이 많았던 도쿄 올림픽 덕분이란다. 잊고 있었다. 참으로 4등은 의미 있었다. 4등을 기획하고 시나리오 작업으로 참여했던 김민아 작가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지도 모르는' 4등을 이야기한다.



1등은 독주(獨走)한다. 남을 앞질러 혼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야만 1등을 하는 것이다. 내내 1등만 해서 1등이 재능이 돼 버린 사람은 자신의 재능 때문에 소외된 사람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천재를 대하는 법

큰 대회가 코앞이니 밤이 깊도록 연습에 매진해야 하지만 광수가 누군가. 천재 수영 선수 아닌가. 광수는 해만 지면 선수촌 담을 넘어 포장마차로 달려가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채운 뒤 주량도 모른 채 마신다. 그런데도 다음날 기록을 재면 전날 자신의 기록을 갱신한 상태다. 대적할 누구도 없으니 광수는 선수촌의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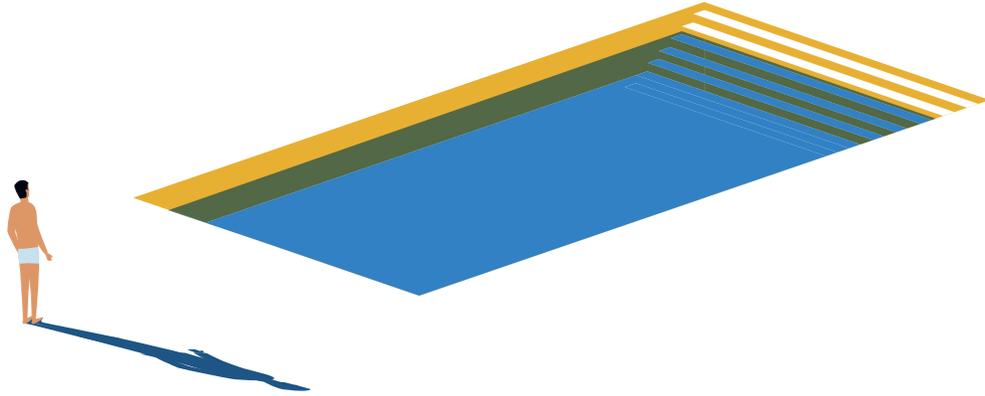
1등은 독주(獨走)한다. 남을 앞질러 혼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야만 1등을 하는 것이다. 내내 1등만 해서 1등이 재능이 돼 버린 사람은 자신의 재능 때문에 소외된 사람인지도 모른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제 손으로 만든 값비싼 상품을 노동자 자신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상품으로부터 소외된다고 했는데, 조금 변주하자면 1등 천재는 의심의 여지없는 재능 때문에 운동을 뺀 나머지로부터 소외된다. 나는 이 사실을 4등 각본 작업을 위해 선수들과 선수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알았다. 코치와 감독, 선수, 학부모로 이루어진 소위 운동 관계자들은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있다고 했다. 운동 천재는 타고난다는 말이었는데, 내게는 그 말이 선

수가 자신이 가진 게 무엇인지 모를 때 가장 위험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관계자들의 눈평도 절반만 진실 같았다. 그들은 천재가 자신의 재능을 귀하게 여기고 오래 정진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늘 눈앞의 성과가 중요하니 천재의 재능을 속히 빼먹는 편에 가깝고, 천재가 망가지거나 평범해질 땐 가차 없이 버리는 것 같았다. 영화 4등 초반 흑백 분량은 자신의 재능만 믿고 안하무인하더니 맞아야 싸다는, 쫓겨나도 할 말 없다는 구타유발자를 그리기 위함이 아니다. 이 시퀀스 안에는 천재로 대접받다 한순간에 버려진 안타까운 한 인간이 담겨 있다.

88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은 지옥 훈련에 돌입한 지 오래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광수는 눈앞에 펼쳐진 노름판에 푹 빠져 선수촌에 복귀할 줄 모른다. 이제껏 독주만 독식해왔던 광수는 운동은 동료 선수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걸 몰랐다. 국위를 선양해줄 천재 선수 한두 명만 중요할 뿐 나머지 선수는 없어도 그만이라는 관계자들의 엘리트 만능주의가 광수라는 기이한 인물을 키운 셈이다. 광수도 이런 국가 스포츠 시스템의 희생자라는 점에서 나는 아직까지는 광수를 옹호할 맘이 있다.

고통 받았으나 뉘우치지 못한다는 것

광수는 체벌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수 생활을 접은 듯 보였지만 '연맹'이라는 조직이 그리 허술할 리 없다. 광수는 불성실하고 제멋대로인 선수 생활 탓에 업계에서 퇴출당한 '꼴통'일 뿐이다. 광수의 시간은 그로부터 16년이 흘렀다. 짧지 않은 시간이니 변화가 일어나기에 충분했지만 광수는 이렇다 할 전망 없이 삶을 낭비한다. 정애가 광수에게 준호를 가르쳐 달라고 의뢰할 때 광수는 어쩌면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만난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광수는 선수촌을 뛰쳐나온 이유, '백 대' 체벌 사건을 까맣게 잊었다는 듯 준호를 때리기 시작한다. 광수는 준호에게 체벌을 어떤 대단한 가르침으로 이해시키려 드는데, 이런 식이다. "내가 잘 나갈 때도 감독선생님들이 오냐, 오냐 하지 않고 나를 때려서라도 더 잡아줬다면 내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야." 광수의 이런 인식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으로는 알겠는데, 이 '문제성'을 문장으로 옮기려면 어쩌해야 할까? 나는 꽤 오



랫동안 고민해왔다. 그러던 차에 놀랍게도 이런 문장을 만났다. “무지로 인한 모든 행위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자발적인 것이 되자면 고통과 뉘우침이 뒤따라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도덕적인 책임)) 무슨 말인가. 광수가 운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잘난 왕처럼 굴었던 과거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일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일은 아니며 아직 구원받을 기회도 있다. 그러나 지도자의 폭력으로 그 자신이 가장 고통받았으면서도 자신이 더 맞지 않아 이렇게 초라해지고 말았다는 괴상한 논리로 16년간 살아왔다면, 광수는 과거로부터 무엇인가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때부터 광수는 뉘우침이 없으므로 ‘알고도’ 자발적으로 행하는 인간이 된다. 용서받지 못한 자로 전략해버리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광수를 옹호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다. 이때 도덕적 책임은 더는 자신만의 규범에 매이지 않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로 확장되는 윤리 감각이 되는 데, 광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물이 되고 만다.

메달 천국, 불신 지옥이 낳은 것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을 광수에게만 지워야 할까. 광수를 가해자의 위치에 세우려면 동조자와 방관자도 함께 찾아내야 한다. 대회만 나가면 4등을 하는 준호이니 이 영화의 주

인공은 의심할 여지없이 준호겠으나, 준호를 조력하는 인물들 없이 준호가 있을 리 없다. 준호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이지만, 스스로의 문제를 의제화하기 힘든 아동청소년의 조건상 관계의 자장 안에서 부대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 준호를 어른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자. 준호가 얻어맞아 가며 운동하고 있음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인물은 준호 동생 기호다. 기호는 폭력에 대한 어른들의 통상의 생각에서 비껴나 있다. 이를 테면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은 ‘필요악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기호는 자신의 형이 맞아가며 운동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성적이 올랐는지 체벌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정말로 궁금하다. 그래서 준호가 드디어 ‘거의 1등’인 2등을 하던 날, 기호는 그토록 들떠서 물어보는 것이다. “형, 형은 정말 맞아서 2등 한 거야? 그 전에는 맞지 않아서 맨날 4등 했던 거야?”라고. (만일 체벌 이후 향상된 준호의 등수만을 칭찬받는 환경에서 기호가 자라난다면 기호는 체벌 옹호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호의 제보로 엄마는 준호가 맞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심지어 새벽에 준호 물래 방에 들어와 준호 몸에 난 짙은 멍을 확인했음에도 정애는 이를 못 본 체한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수영에서 건져 낼 힘이 있는 첫 번째 어른이었지만, 아이가 빠진 수영에 아이를 그쳐 둔다. 곧 이어 준호 아빠도 아이가 체벌당해 왔던 사실을 알게 되지만 “감독이 선수를 때려?”라고 분노하는 게 전부다. 준호 아빠는 한 술 더 떠 한 번만 더 체벌하면 ‘물밥’ 못 먹게 할 거라고 광수를 협박조로 달려더니 돈이 든 봉투를 건넨다. 그는 말하자면, 여전히 수영에

빠져 있는 아이의 얼굴을 안타까이 바라보더니 맨홀 뚜껑을 아예 닫아버린 사람이다. 이보다 무서운 어른들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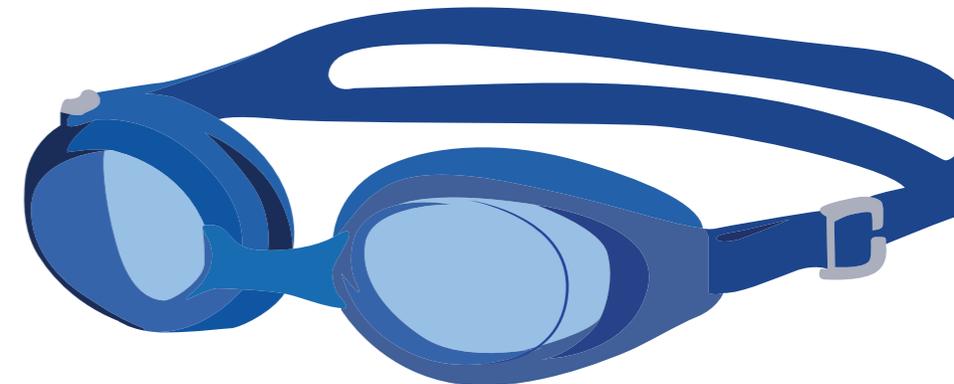
준호의 수경이 의미하는 것

감독과 나 역시 수시로 구멍에 빠졌다. 우리는 과연 준호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다 우리는 준호가 처음 수영을 시작한 이유를 생각해냈다. 그때 준호는 학교만 파하면 수영복과 수경을 챙겨 수영장으로 달려가는 행복한 소년이었다. 이제 준호의 수경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 걸까. 앞서 나는 준호를 연약하다고 표현했지만 어린이의 다른 말인 이 작은 사람은 어른의 통념에 쉽게 가뒀지 않았다. 영화 속 준호는 주변이 온통 캄캄해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물이다. 준호는 이걸 쓰고 메달 많이 땀다며 광수가 건네 준 수경을 점퍼 주머니에 한동안 넣고 다닌다. 그러다 엄마의 강요도, 광수의 코칭도 더는 없이 혼자만의 (사색의)시간을 가진 뒤에 대회에 출전해보기로 마음먹는다. 대회 당일 새벽, 방을 나서서 준호는 책상에 놓인 광수의 수경을 잠시 바라본다. 그토록 하고 싶은 수영을 쪽 이어갈 수 있다면 준호는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 그런 절실함이 마음속에 차올랐으니 광수의 수경은 합격 엮이거나 행운의 부적이었다. 그러나 준호는 자신의 수경을 집어 든다. 언젠가 4등 시사회가 끝난 후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서 나는 말했다. 준호는 이 장면에서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구세대와 담백하게 이별하고 있다고.

영화 4등의 엔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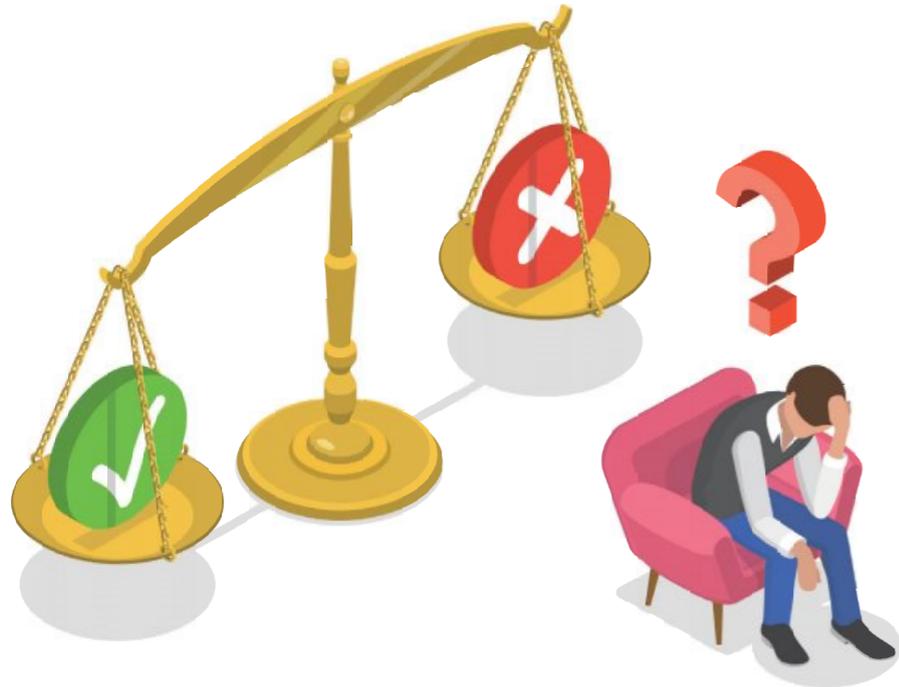
인권 잡지 편집자는 내게 영화 4등 원고를 부탁하며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패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4등들을 응원해 달라”고 했다. 얼마 전 끝난 도쿄 올림픽에서 4등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 4등임에도 충분히 만족하고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고, 4등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기사도 더러 보았다. 긍정적인 변화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는 이 환호를 의심한다. 진심으로 4등이 1등보다 낫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대신 나는 1등은 4등보다 초조하고 불안해 한다는 이야기를 믿는다. 고전작품들의 단골인 ‘원하는 것을 얻는 자는 반드시 파멸한다’는 메시지도 독주하는 자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1등 주인은 매번 바뀌지만 1등 신화는 불변하므로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1등에 맞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4등이 1등보다 사회적일 수는 있다. 4등은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동료가 함께 서 있다. 나는 지금 1등의 외로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 4등 엔딩에서 준호가 기어이 1등을 하고야 말았을 때 나는 형언할 수 없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언젠가 4등 시사회가 끝난 후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서 나는 말했다. 준호는 이 장면에서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구세대와 담백하게 이별하고 있다고.





문제는 사법 시스템 -오판은 우연한 실수가 아닌 우리 모두의 실패- 브랜던 개릿의 <오염된 재판>과 <허위 자백과 오판>



미국 듀크대 로스쿨 교수인 브랜던 개릿의 <오염된 재판>에는 250명의 오판 피해자가 등장한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조작된 증거로, 허위 자백으로, 오류가 담긴 목격자의 증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을 추적했다. 모두 미국 사례로, 250명은 평균 13년을 감옥에 있어야 했다. 80명은 종신형이었고 17명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 집행 직전에 무죄가 밝혀진 이들도 있었다. 책 <허위 자백과 오판>은 사법체계에서 나온 오판 사례의 다수가 허위 자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허위 자백과 오판>에서 소개하는 연구 사례를 보면, 1900년에서 1987년 사이 미국에서 법정형이 사형인 사건 중 350개의 유죄판결

이 잘못됐다. 이중 94개 사건(14%)에서 허위 자백이 사형 선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법시스템의 '오판'은 사형제를 반대하는 오랜 논거 중 하나다. <오염된 재판>과 <허위 자백과 오판>은 사법체계에서 왜 오판이 발생하는지 구조적 원인을 짚는다. <오염된 재판>은 "오판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라고 말한다. 오판은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의미다.

과학수사의 맹점

'결함 있는 과학수사'는 오판의 한 원인이다. <오염된 재판>은 "오판 피해자 사건에서 법과학은 흔하게 사용되지만 완

벽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149쪽)고 말한다. 저자는 주요 오판 사례 153건에서 과학을 표방하지만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법이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체모비교법, 혈청학(ABO형 구분), 치흔 비교, 족적 비교, 음성 비교, 지문 비교가 어떻게 오판 피해로 이어졌는지 소개한다. <허위 자백과 오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가 과학 수사의 대표 사례로 등장한다. 미 수사기관이 과학적 이미지를 얻고 최종적으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안했다. 저자는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지 몰라도,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리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을 측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측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허위 자백과 오판>에서 소개하는 연구는 결백한 이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비율이 50%에 달한다고 밝힌다. 다시 <오염된 재판>. 과학수사의 오류도 결국 과학으로 밝혀진다. DNA 검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2000년을 기점으로 오판 피해자가 연이어 확인되기 시작했다. <오염된 재판>에서 다룬 250명의 오판 피해자는 모두 DNA 검사로 항소심 혹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이중 112건에서 DNA 검사로 진범이 밝혀졌다. 아마 과학이 발전해 한계를 뛰어넘으면, 더 많은 오판 피해자와 진범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DNA 검사도 만능은 아니다. DNA 검사 결과를 재판부가 무시하거나 DNA 검사 결과를 곡해할 때 여전히 오판 가능성이 존재한다. DNA 검사는 "신빙성 있는 증거라도 법정에서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되거나 실험실에서 잘못 해석될 경우 잘못된 유죄판결을 유발할 수 있다"(168쪽)는 점을 보여준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다.

개혁의 이유

오판 피해자는 허술한 과학수사만이 아니라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에서, 수감자의 제보에서도 나온다. 결국 시스템의 실패고, 구조의 문제다. <오염된 재판>과 <허위 자백과 오판>은 모두 사법 시스템 개혁

을 이야기한다. 피의자 심문 절차와 법과학 개혁, 수감자 제보 남용 방지나 검찰 개혁 등이 제시된다. 미국 기준으로 제시된 개혁 방법이지만 한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염된 재판>에는 "중범죄 판결의 오류율이 0.027%라는 이야기는 성공률이 99.973%"(고 앤터닌 스캘리아 전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라는 반론이 소개된다. 오판은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례적 사례'라는 취지다. 드러난 오류가 0.027%일 뿐, 드러나지 않은 오판은 더 많을 것이다.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비행기 추락사고급임에도 이를 조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385쪽)는 지적처럼 오판 사례 발굴에 적극적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판 이후 '0.027%'는 끔찍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오염된 재판>이 소개하는 오판 피해자 250명은 DNA 검사로 결백을 입증 받는 데까지 평균 15년이 걸렸다. 출소한 뒤에도 대부분 "자신들이 감옥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은 해명을 잘 믿어주지 않는다"(370쪽) 현실을 겪는다. 경제적 보상조차 제대로 못 받거나,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오판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이 삶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1.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2.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 권고

3.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정

4. 업무수행 중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 파손, 요양불응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견 제출

5. 경찰의 인종차별적 발언 및 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

시대에 큰 획을 그쳤다면 출발했을텐데 글썽... 스무살쯤 되어 생각하니 모든 게 모호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몇몇 의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 굼직굼직한 질문을 던졌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 작은 변화나마 도모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과도한 자기도취는 아닐 듯합니다. 딱 그런 기준에 따라 5개의 결정을 꼽아 격월간지에 곱씹는 지면을 마련해보았습니다. 20년, 9000여 결정 중 다섯 꼭지라니. 타이밍, 분야의 안배, 무엇보다 청탁의 용이성으로 선정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의족은 신체의 일부인가?”

20년간 인권위만이 적극적으로 답해야 했던 물음과 앞으로의 물음^[1]

[1] 김원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2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자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았음을 호소할 곳이 마침내 생겼다. 식당에서 장애인이 라는 이유로 출입 거부를 당했을 때, 학령기가 된 장애아 동에게 친절할 얼굴로 통학이 불가능한 특수학교를 소개 하는 학교장을 마주했을 때, 택시에 타려는 순간 휠체어를 확인하고서 내달려버리는 택시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학교장의 이름과 자동차 번호판을 외우며 울분을 삼키던 사람들이 취할 마땅한 조치는 없었다. 2001년 인권위원회가 서울 중구에 개소한 순간 수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기억했던 이름들과 차량번호를 상기하며 가지각색의 사정을 전화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편지로 호소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인권위원회는 이제 한 해 천 건이 넘는 장애인차별사건을 다룬다. 장애인차별사건을 해결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은 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늦게 나오거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인권위를 비판하기도 한다.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인권기구를 비롯해 인권위원회가 하던 역할을 나누어 가진 기관도 존재한다. 인권위는 ‘호소’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의미를 지니

그중 하나는 이를테면 1970년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물음과 관련이 있다. 그는 한 책에서 물었다. “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시각장애인의 몸은 어디서 끝나는가? 손이나 발끝인가, 지팡이의 끝부분인가?”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사고실험이기도 하지만, 인권위원회에는 이러한 물음이 실제 어떤 사람의 삶에 절실한 문제로서 찾아온다.

2001년 인권위원회가 서울 중구에 개소한 순간 수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기억했던 이름들과 차량번호를 상기하며 가지각색의 사정을 전화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편지로 호소할 수 있었다.

는 기관이 더는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인권위원회가 아니라면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사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이를테면 1970년 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물음과 관련이 있다. 그는 한 책에서 물었다. “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시각장애인의 몸은 어디서 끝나는가? 손이나 발끝인가, 지팡이의 끝부분인가?”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사고실험이기도 하지만, 인권위원회에는 이러한 물음이 실제 어떤 사람의 삶에 절실한 문제로서 찾아온다. 2011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A씨가 눈을 치우다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한쪽 다리 대신 그의 체중을 지탱하던 의족이 파손된다. A씨는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당장 생활에 지장이 생겼으며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제1조) 하에 지급되므로, A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겪은 사고가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한다. 왜 그랬을까? 법에 따른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A씨의 의족이 파손된 일은 그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부상’은 사람의 몸, 신체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었다. 법률의 해석은 그 문언(법률에 글로써 쓰인 말)을 함부로 벗어나서는 안된다. 선거로 선출되지도 않은 사법부의 엘리트들이 법을 창조하는 일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로 선출된 우리 입법자들의 얼굴을 떠올려보라. 그 가운데 의족을 착용한 노동자가 눈을 치우다가 의족이 파손되는 사태 따위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법부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로) 보수적인 문언해석을 하고, 입법자들은 미처 상상하지 못하여 개인의 경험을 제도화하지 못했을 때, 이 중간 지대에서 누군가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필요가 생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록 많은 한계 속에서도 지난 20년간 해온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테다.

A씨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2014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위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요양급여 대상에서 의족과 같이 신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보철을 제외하게 되면,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유사한 부위에 피해를 입어도 장애인근로자만이 요양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세계 장애인권리협약으로부터 나오는 평등의 요청에 반한다. 둘째, 근로상황에서 ‘의족’을 근로자의 신체가 아니라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다. A씨는 “의족을 사용함으로써 생물학적 다리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당해 사고 발생 전까지 무리 없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때 의족은 “불편과 기능상의 필요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 다리를 완전히 대체하여 생물학적 다리와 같이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족이나 의수, 힌지팡이, 안내견,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

사법부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로) 보수적인 문언해석을 하고, 입법자들은 미처 상상하지 못하여 개인의 경험을 제도화하지 못했을 때, 이 중간 지대에서 누군가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필요가 생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록 많은 한계 속에서도 지난 20년간 해온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테다.

기나 지원동물이 그저 나와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일상 전반에서 오랜 시간 몸의 일부분으로 작동한다.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어디까지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지는 물론 논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되어 그 노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의족을 그저 생물학적인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 이 ‘의문’은 철학적 사변을 넘어 장애를 가진 몸의 경험에서 시작되는 타당한 물음이다. 인권위원회는 이 물음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리 속에서 재구성하기 위해 애썼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판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으로 보내게 될 20년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필요한 정책을 권고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은 앞서 살펴본 의족에 대한 요양급여 사건처럼, 기술과학이 열고 있는 급격한

비슷한 경험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입법자들과, 함부로 법을 창조해서는 안 될 사법부 엘리트들 사이 공간에서 인권위가 마주할 새로운 과제들이다.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어디까지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지는 물론 논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되어 그 노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의족을 그저 생물학적인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

사회변화의 한가운데서 제기되는 물음이 인권의 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인간의 몸과 정신의 경계, 자율성과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되묻는 매우 철학적인 물음들이, 구체적인 개개인의 절박한 삶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비슷한 경험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입법자들과, 함부로 법을 창조해서는 안 될 사법부 엘리트들 사이 공간에서 인권위가 마주할 새로운 과제들이다.

#인권재단_사람 #변화의 구심점



인권활동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다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한 인권재단 사람의 차지에 활동가

지난해 인권재단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7주간의 인권운동 연속 강좌와 1주간의 집중 워크숍으로 진행되어 32명의 인권활동가가 참여했다. 인권재단 사람의 차지에 활동가는 이번 사업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인권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권활동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권활동가들의 교육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다

인권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익재단 ‘인권재단 사람’에 소속된 차지에 활동가는 인권활동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도 참여했다.

“2019년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가 실시됐는데, 인권운동이 지속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운동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인권활동가의 배움을 통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인권단체들은 자체적인 교육 운영이나 인권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킹 형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이 교육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고 생각하여 이번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대표 활동은 강좌, 토론회, 워크숍으로 구성돼 8주간 진행됐다. 강좌는 1주차 박래군 활동가의 ‘나의 인권운동 30년’, 2주차 류은숙 활동가의 ‘인권의 역사와 핵심 가치’, 3주차 배경내 활동가의 ‘인권감수성과 질문하는 힘’, 4주차 박래군 활동가의 ‘인권기행’, 5주차 타리 활동가의 ‘반차별과 인권운동’과 박한희 활동가의 ‘한국사회 혐오와 인권운동’, 6주차 나영 활동가의 ‘여성주의와 인권운동’과 김현민 교수의 ‘난민·이주민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경계인들’, 7주차 김혜진 활동가의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등으로 구성됐다. 모든 강좌에서는 강사와 참여자가 서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배치해 각자의 활동 분야를 넘어 인권운동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8주간의 여정은 회계교육, 헌법교육 등이 포함된 무박 2일 동안의 워크숍으로 마무리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준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인권활동가를 위한 교육인 만큼 모두가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 접근성, 성중립 화장실, 비건 식단 등을 고려했다. 또한 농인 참여자와의 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사를 갖추었다. 형식상의 조치가 아닌 수어 통역사를 수어 통역에 도움이 되는 자리에 배치하기, 영상 상영 시 수어통역을 위해 불 끄지 않기 등 신경을 썼다. 이번 사업을 중심에서 진행했던 차지에 활동가가 말을 이었다.

“참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재단 사람은 가이드 매뉴얼을 만들어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가 인권활동가라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교육을 마치면 뒤풀이를 통해 더 적극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인권활동가들이 열악한 운동 환경, 부족한 재정 지원, 소수자의 편에서 받게 되는 차별 등 인권운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조금이나마 이겨내고, 어느새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변화의 구심점이 되어 나아가다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의 프로



그램을 마친 뒤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와 ‘평가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권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인권활동 분야를 이해하게 되었다’,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을 얻었다’ 등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인권운동 내에서 관계망을 형성하여 정서적 지지, 활동의 자원, 연대의식 등을 얻었고,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이 향상되어 인권운동의 공동과제를 모색하게 됐다.

물론 이번 사업이 단시간 안에 눈에 띄는 변화로 이어질 수는 없다. 하지만 더 많은 인권활동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인권재단 사람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인권활동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차지에 활동가도 인권활동가의 삶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덧붙였다.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모든 걸 헌신하며 참고 인내하다가 끝내 지쳐서 포기하는 일을 예방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침해 당사자들 곁에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활동가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변화의 구심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애쓰며 나아가다

인권의학연구소의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1942년 소년 감화 목적으로 설립된 ‘선감학원’. 1975년 부랑아 단속 시설로 개설된 ‘형제복지원’. 1961년 사회 명량화 사업으로 운영된 ‘서산개척단’. 모두 군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보호의 대상인 전쟁고아나 부랑아를 강제수용한 시설이다. 강제수용된 사람들은 시설 내에서 노동착취, 굶주림, 폭력 등을 당했다. 이들의 인권침해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은폐되었고, 생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치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했다.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다

지난해 인권의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일환으로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현장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의 정신심리적 현황을 파악했다. 심층 인터뷰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의 각각 피해자 5명을 선정하여 총 15명을 인터뷰했다. 인권침해 피해 내용, 자조모

#인권의학연구소

임을 통한 진상규명 노력, 공공기관의 조사와 지원책에 대한 만족도, 신체적 및 정신심리적 후유증 등을 알아보는데 중점을 뒀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는 강제수용시설이 위치해 있던 안산, 부산, 서산을 방문한 후 지역 공공기관의 지원책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와 요구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사업의 책임자인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상임이사가 사업 참여 계기에 대해 밝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양적조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후유증과 요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현황 조사와 트라우마 치유방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인권의학연구소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피해 현황과 현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피해자 자조모임에 진상규명 활동들을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의 지원과 재할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과 연대를 통한 인권증진 방안을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번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심리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자가 전 생애에 걸쳐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아동기에 강제수용시설에서 경험한 가혹한 폭력, 교육의 부재, 퇴소 이후 ‘부랑아라는 낙인, 가족의 부재 등은 피해자가 성년기가 되어도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 취약계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비난을 거듭하다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화영 상임이사가 피해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강제수용 인권침해 생존자들과 유족을 대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설명회가 열렸는데, 설명회에 앞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이유는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동기에 강제수용되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60대가 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피해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의 연구진은 피해자 요구에 맞추어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피해 상황이 깊고 광범위해 트라우마 치유와 재할 지원 역시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범위로 이뤄져야 함을 확인했다. 안정된 주거 시설과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이번 사업의 유의미한 점은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의견을 들어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인권의학연구소는 이번 사업으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재할을 위해 국가 손해배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과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재외상화 방지를 위한 조사관 교육의 필요성도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화영 상임이사는 “국가는 과거의 강제수용시설을 운영했고 사회공동체는 이를 침묵한 채 방관했다는 점에서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 치유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진실규명과 손해배상을 받을지라도, 편견과 낙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조사로만 끝나지 않고,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단체들의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말한다 - 1

연이은 군 내 성폭력 피해발생 및 생명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8월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 및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및 수사 경과를 살펴보았으며,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각 군의 자체적인 노력과 2017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나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실태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및 조사본부, 육·해·공 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과 관련 제도나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문화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제도, 구조, 작동체계 등 전반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34조 등 법령 개정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 어린이집, 시군구 등에 적극 알리고 관련 사항 및 신청서를 「보육사업 안내」 등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육사업 안내」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 등을 통해 안내하였다며 해당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추가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하였다.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법 체계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대부분의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확대는 그 범위·수준·내용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불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권고 이행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공포된 국제인권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협약의 이행 의무가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결정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할 것
2.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 어린이집, 시군구 등에 적극 알리고 관련 사항 및 신청서를 「보육사업 안내」 등에 포함할 것

권고의 배경

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다.

2013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자녀,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정되었던 보육료 지원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 또는 가정 양육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의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열악한 환경인 일터에 데리고 가고 있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이주아동의 보육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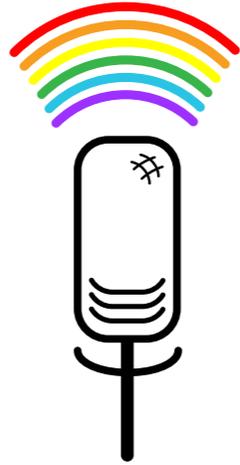
「헌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이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인권위, 선거과정 및 방송에서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근절 위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기간에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한 공직선거(예비)후보자와 지자체 공무원의 혐오표현,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진정사건들이 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하였으나,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 ○○시장 예비후보가 20xx. x. xx. TV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광장과 같은 도심에서 개최되는 것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은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퀴어축제를 ○○광장에서 개최할 경우 광장 기능을 제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거부할 권리의 대상으로 명명한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하여 그동안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은 정당○○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

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 ○○시 공무원들이 2019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광장에서의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혐오발언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공무원에 의한 혐오표현은 공무원이 갖는 공신력 등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표적 집단 구성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성원에게도 혐오표현이 가진 사상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두 차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주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차별을 선전하거나 부추긴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방송사의 영화 방영 시 성소수자 차별

피진정방송사가 영화 <○○○○ ○○○>를 방영하면서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피진정방송사는 20xx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동성에 코드가 담긴 여고생 키스장면을 방송한 드라마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선례를 검토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상파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대중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진정방송사가 동성 간 키스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피진정방송사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재현되는 가시성의 실현을 위해 방송 편성 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표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향후 심의 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말한다 - 3



국민 10명 중 9명, “정치인·언론 혐오표현 자제해야”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은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신고처리 절차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향후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혐오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치인·언론이 혐오표현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게 공감하였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

이번 조사에서 오프라인 실생활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응답은 67.2%로 조사되었으며,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서는 79.3%가 ‘심각하다’고 답해, 응답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혐오표현을 접한 장소는 인터넷 뉴스 기사 및 댓글(71.0%), 유튜브 등 개인 방송(53.5%), 커뮤니티 게시판(47.3%), SNS(35.9%)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장소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후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73.5%)’면서도 ‘대응하지 않았다(40.2%)’거나 ‘피하게 되었다(33.6%)’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응답이 73.8%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혐오표현에 반대 표시(17.5%)’를 하거나 ‘신고했다(4.8%)’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를 해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43.5%)’,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20.0%)’ 등이었다.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이러한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방안으로 ‘용이한 신고·조치 절차마련(89.5%)’,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강화(87.5%)’, ‘관련 기구의 적극 심의·조치(87.3%)’, ‘사이트별 관련 지침 제작·게시(86.9%)’ 등에 대다수가 동의하였다. 한편,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이라는 응답이 80.4%로 가장 높았고, ‘특정지역 출신(76.9%)’, ‘페미니스트(76.8%)’, ‘노인(7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경험 대상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59.5%)’고 느끼는 가운데, 향후 혐오와 차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지고(90.2%)’,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87.7%)’, ‘소수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79.5%)’, ‘차별 현상이 굳어질 것(79.2%)’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혐오차별 국민 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정적 전망 수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혐오차별

혐오표현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86.1%)’,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약자에게 표출(82.4%)’, ‘언론의 보도 태도(79.2%)’를 꼽은 응답은 2019년 조사 결과보다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방관’ 항목에는 85.5%가 동의한다고 답해, 혐오표현에 대한 사업자들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치인 등 유명인이 혐오표현을 써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76.3%)’는 응답이 2019년 인식조사 결과(49.4%)에 비해 급증하였는데, 이는 정치인 등의 혐오표현은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혐오표현 발생 원인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정치인·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 자제(90.3%)’였다. 혐오차별 대응 정책인 ‘학교 내 혐오차별 예방 교육 확대(89.9%)’, ‘혐오차별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강화(89.4%)’, ‘악의적 혐오표현 사법조치(86.1%)’,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6.0%)’, ‘평등권 보장 법률 제정(85.7%)’, ‘차별시정기구 권한 강화(81.0%)’ 등에도 대부분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한 찬성의견은 2020년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88.5%)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혐오차별 대응 정책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무선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pm 2.8\%p$ 수준이다.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노숙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3월 11일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대응지침을 개선할 것,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을 확대할 것, 노숙인을 위한 응급의료를 포함한 조치와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장은 노숙인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시설 확대, 격리공간 내에 유리 칸막이·음압기 등 설치, 대응매뉴얼 수정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급식지원 사업 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혀 왔다. 또한, 노숙인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해 갈 것이라고 권고 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1년 9월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해가고 있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하였다. 더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러한 권고와 이행상황을 알려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모범적 사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향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노숙인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과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등을 통해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인권위가 말한다 - 5



News 1

2021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우리 사회 인권 현주소와 전망, 인권옹호자 활동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 옹호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살펴보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2021 인권옹호자회의'를 8월 25일 온라인 회의로 개최했다. 인권옹호자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인권옹호자가 한자리에 모여 인권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사회 인권 현주소와 전망 - 인권옹호자 활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의 '우리 사회 인권 현주소와 전망'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전망으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인권 현황'(특별분과), '지자체 인권위원회 활동 현황 및 전망'(제1분과), '지자체 인권보호관 활동 현황 및 전망'(제2분과),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 현황 및 전망-네트워크 운동을 중심으로'(제3분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활동 현황 및 전망'(제4분과), '대학 인권센터 활동 현황 및 전망'(제5분과), 인권옹호자 활동 현황 및 전망(종합 분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권위, 지자체 인권전담 부서와 지자체 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옹호 활동의 주체, 내용, 영역은 계속 확장되어 왔다"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 옹호 활동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이루어 낸 성과와 한계를 통해 앞으로의 인권 옹호 활동의 전망을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옹호자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줌(zoom) 화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회의 영상은 8월 26일(목)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에 공개되었다.

News 2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8월 31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인권위의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첫 토론회로서,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인권 기반 접근의 공론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 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탄소 사회의 종말」 저자인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기후위기 인권기반 접근의 논리와 방향을,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이 인권의 관점에서 본 기후위기대응법의 제정 방향을, 박지혜 (사)기후솔루션 변호사가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송의 경과와 의의를 각각 발제했다.

News 3

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宋斗煥)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4일자 임명되어 6일 취임하였다. 송두환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News
4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및 '평등법' 제정 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유럽연합(EU),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함께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인권단체, 학계,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난민·이주민 등의 인권보호 및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한 주요 국가의 성과와 도전사항을 공유했다.

기조연설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연설을 한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 대표부대사가 기조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평등법 제정' 관련 국내외 대응 동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세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각 부문별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2세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및 국가인권기구,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대응을, 마지막 제3세션은 '평등법 제정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위가 함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발행	2021년 9월 30일
창간	2003년 8월 1일 국제연속표준간행물[ISSN] 1599-9599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주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3층 홍보협력과
발행인	송두환(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편집주간	송소연
편집장	윤설아
편집	백인애
제작	(주)대통기획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권」은 비매출입니다.